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1. 4. 19.
총무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4월 14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1년 4월 14일
- 다. 상정일자 : 제7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(2001. 4. 19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세무2과장 조한영

가. 제안이유

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·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임대주택 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2세대 이상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현행 "60제곱미터(18평)이하"에서 "85제곱미터(25.7평)이하"로 확대 적용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·월세금의 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2세대이상 을 임대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확대 적용하여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1. 2. 7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시달된 구세 감면조례증개정조례(안)에 의하면 과세면제·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써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

- 질의요지(김영식 위원) :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임대개념이 다른 것은?
- 답변요지(조한영 세무2과장) : 여기서 임대주택은 공동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, 근본 취지는 임대주택 보급을 확대 하기 위하여 혜택을 주는 것임.
- 질의요지(박주서 위원) : 임대업자로 등록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?
- 답변요지(조한영 세무2과장) : 공동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1. 4. 13

제출자 :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·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 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임대주택 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2세대 이상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을 현행 “60제곱미터(18평)이하”에서 “85제곱미터(25.7평)이하”로 확대 적용함.

(안 제9조제3호)

3. 제정근거

- (1) 지방세법(2000. 12. 29 법률 제6312호) 제7조 내지 제9조
- (2) 지방세법시행규칙(2000.12.30, 행정자치부령 제116호) 제2조

4. 조례(안) : 따로붙임 참조

5. 예산조치 필요성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(2001.3.20 ~ 4. 9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.
- 나.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득함.(서울시 세정 13415-150, 2001.2.7) 공문 통보
- 다. 2001. 4. 13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: 원안의결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3호중 “60제곱미터이하”를 “85제곱미터이하”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일반적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